수 영 구

새 수 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수 영 구 보

호외 제231호 2012.12.20(목)

고 시

○ 조례 제6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02
○ 조례 제6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조례 제6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 13
○ 조례 제6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 18
○ 조례 제6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조례 제6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회람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문화공보과 (610-407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현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6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민원발급기" 라 한다),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번호(민원발급기에 한함)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및 발행장소,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관리책임공무원 지정)구청장은 계기, 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구 본청 및 보건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동 : 동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1조 제목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증지수입금의 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 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계기, 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단서내용의 “계기”를 “계기, 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년 월 일 (요일)	결재	주무관	조사법무담당주무관	기획감사실장

구분 (단위: 원)	금 일						누계					
	발급		결손		입금		발급		결손		입금	
	통수	금액	통수	금액	통수	금액	통수	금액	통수	금액	통수	금액
계												
000원												
000원												
0000원												
면제												
공용												
총계												

※ 구분: 금액 종류별 작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민원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주민시스템"이라 한다),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번호(민원발급기에 한함)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및 발행장소,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5조의3(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계기: 구본청 및 보건소는 사용부서의 담당주사, 동은 동장이 지명하는자 2.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	제5조의3(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계기,민원발급기,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구본청 및 보건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동 : 동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1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생 략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또는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한 후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1조(증지수입금의 정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계기,민원발급기,주민시스템,지방세정보시스템----------계기, 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③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③ 계기, 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증지의 소인) ①----------계기----------	제24조(증지의 소인) ① ---------- 계기, 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지 제 10호서식】

수입중지요금계기사용 수수료 수입금일일결산대장

(계기번호:)

권종별 연월일		계									000원					
		발급			결손			실수입			발급			결손		
	일계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누계															

000원						000원						000원						결제		
발급			결손			발급			결손			발급			결손			계	담당 (주무)	과장 (동장)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 발급액 - 결손액 = 실수입액

개 정

【별제 제10호서식】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년 월 일 (요일)	결재	주무관	조사관	처장

구분 (단위: 원)	금 일						누계					
	발급		결손		입금		발급		결손		입금	
	통수	금액	통수	금액	통수	금액	통수	금액	통수	금액	통수	금액
계												
000원												
000원												
000원												
면제												
공용												
총계												

구분 : 금액 단위별로 작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지 제 11호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수료 수입금일일결산대장

(계기번호:)

권종별 연월일		계									000원					
		발급			결손			실수입			발급			결손		
	일계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누계															

000원						000원						000원						결제		
발급			결손			발급			결손			발급			결손			계	담당 (주무)	과장 (동장)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건수	통수	금액			

※ 발급액 - 결손액 = 실수입액

개 정

[별지 제 11호서식]

〈삭제〉

◆ 제정이유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 이미지 수입증지를 인쇄 발급토록

❍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서의 발급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수입증지 종류에 전자적 수입증지 사용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의 전자적사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호외 제231호 새수영(수영구보) 2012.12.20(목)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현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6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대상)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설>	제4조(지원대상)①----------.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개정이유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중 제외대상 규정신설로 보조금이 부적정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지원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적용으로 지원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지원 제외

○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거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현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6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와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6명 이내
2. 주민도시위원회 6명 이내

제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사.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2. 주민도시위원회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10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

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장 특별위원회

제13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개정후 최초 선임된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6대 수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하되, 상임위원회위원 및 상위임원장의 직무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한다.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화를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수영구의회 위원회 설치와 목적 (안 제1조 ~ 제2조)

○ 위원의 선임, 부위원장 및 위원장의 직무 (제3조 ~ 5조)

○ 상임위원회의 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안 8제조~ 제9조)

○ 상임위원회의 임기, 상임위원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2조)

○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현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6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체육 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생활체육 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교실”의 명칭으로 직접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

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와 지원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지원
5.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6. 생활체육 교실 설치·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수영구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영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8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교실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위탁조건 등 교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2. 생활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4.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생활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나. 제2조 (용어의 정의) 생활체육, 생활체육단체, 생활체육 시설 등

다.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시설 설치와 운영

라. 제4조 (생활체육의 지원)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

마. 제5조 (기금의 설치) 수영구 체육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바. 제6조~10조 (주요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강사위촉, 수강료 등

사. 제11조 (표창) 생활체육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현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6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880,000원”을 “2,030,000원”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880,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 2,030,000원 ----------. ----------.
[별표 2]	[별표 2]
(신설)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정이유

○ 2013년에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3조에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은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함(안 제3조)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30천원(연간24,360천원)의 월정수당 지급

나. 별표 2 비고란 신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현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6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13명”을 “5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01명”을 “505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0% 이내	22% 이내	31% 이내	28.5% 이내	10.3% 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8.4% 이내	25.6% 이내	39.5% 이내	26.5% 이상

별표 3 중 직급별 총계란 “513”을 “517”으로 하고, 일반직 계 총계란 “454”을 “465”로 하며, 6급 이하 계 총계란 “417”을 “428”로 하고, 기능직계 총계 란 “55”을 “48”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 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1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01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517명----------. 1. ---------- : 505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1% 이내	22% 이내	30.4% 이내	29% 이내	10.3% 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7.5% 이내	26.5% 이내	39.5% 이내	26.5%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 (생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0% 이내	22% 이내	31% 이내	28.5% 이내	10.3% 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8.4% 이내	25.6% 이내	39.5% 이내	26.5%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 계	51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54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7	2	3		10
6급 이하 계	417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55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 계	51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65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7	2	3		10
6급 이하 계	42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계	2	-				
기능직 계	48	-				

◆ 제정이유

❍ 사회복지인력 확충 관련 2013년도 신규 사회복지직 채용 인원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지침(행정안전부)과 관련 2012년 하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전환인원을 정원조정하며

❍ 일반직, 기능직 정원 조정으로 인한 직급별 실제 정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공무원 정원의 총수 : 513명 ⇒ 517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501명 ⇒ 505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비율 조정(안 별표 2)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0% 이내	22% 이내	31% 이내	28.5% 이내	10.3% 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8.4% 이내	25.6% 이내	39.5% 이내	26.5% 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계 513 ⇒ 517

2) 일반직 계 454 ⇒ 465, 6급 이하계 417 ⇒ 428

3) 기능직 계 55 ⇒ 48